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0.

발 의 자 : 김 윤 · 이병진 · 남인순
서영석 · 서미화 · 이주희
채현일 · 전진숙 · 정태호
이상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패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,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,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,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.

또한, 현행법령은 각 중앙회에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, 연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연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·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연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

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및 제82조).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연수교육”을 “연수교육, 제2항의 개인정보 제공”으로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.

제8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

③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단체는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연수교육) ① (생략)	제15조(연수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. ③ -----연수교육, 제2항의 개인정보 제공----- --.
제82조(수수료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면허·등록·허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제82조(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의2.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</u>

2. ~ 7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2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단체는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 수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.</u>
--	---